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공 보

제895호 2014년 10월 24일(금)

훈 령

○ 속초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 2

회 람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속초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속초시장 (직인)

2014. 10 . 24 .

속초시 훈령 제 668 호

속초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속초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의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속초시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사람 및 처벌 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형법」,「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및「공직자윤리법」등 그 밖의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부서책임자와 감사·조사 업무담당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2조에 따른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시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할 때 그 범죄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200만원 이상(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을 말한다) 공금을 횡령하였을 경우
2. 공금횡령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공금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 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란 범죄혐의자가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 등을 말한다.

② 범죄혐의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따라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속초시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③ 고발장은 시장의 명의로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 사항의 관리) 감사부서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아니한 사유 등을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시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묵인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69조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조치) 시장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이 규정을 준용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 고발지침을 제정·시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공직자의 부패행위 적발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이 마련 되어 있지 않아, 사법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자체 징계만으로 마무리하는 사례가 발생 할 수 있어「속초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